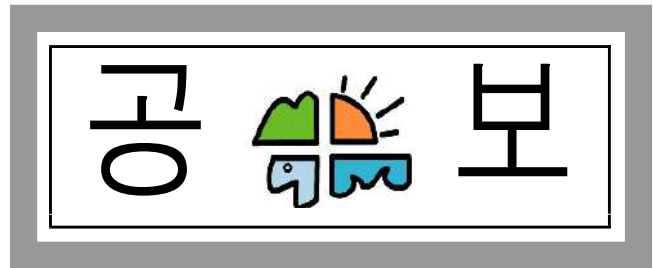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49호 2020년 2월 28일(금)

조 례

- 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
-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7
-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8
-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0
-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18
-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6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3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36
- 하천점용허가 고시 38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39
- 공시송달공고 41

입법예고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5
-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88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35호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5조(「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6조(「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서식]

(앞 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건 축 물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지원유형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조례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확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민원인(동의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36호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5,000원”이하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37호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속초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38호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학교”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와 시 소재 대안학교,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각각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향
2.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시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①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추진사업의 수행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여성관련 기관
2. 대안학교
3.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 속초경찰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9조(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3. 추진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및 반영
 4.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안학교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39호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속초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7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0호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56호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 용자추천 신청서(제4조 관련)

☐ 운전자금 ☐ 시설자금 (세부사업명:)									
업 체 명				설립일			대표 자	성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기 번 호)						생년월일 :			
본 사	주 소					전화			
연 락 처	담당자		휴대폰	HP		(☎)			
종 업 원 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물					
자 산 총 액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 매 출 액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용 자 추 천 신 청 액	백만원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각 종 인 증 등 특 이 사 항									
대출희망은행		은행(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설 자금	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건적서) 및 내역서

※ 구비서류 공통 中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자추천 심사
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하위 점수 적용

[별지 제17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감 면 신 청 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감 면 내 용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가족) ☐ 고엽제후유자(본인, 가족) ☐ 5·18 민주유공자(본인, 가족) ☐ 장애인(본인, 1~3급 장애인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 의사상자(본인, 가족) ☐ 할인(2종목이상, 3개월, 6개월, 12개월, 여성할인)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민원인(동의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국민체육센터장 귀하

기 재 요 령

1. 감면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국가보훈증, 복지카드, 수급자증명, 자원봉사자증, 의사상자증, 학생증 등을 기재한다.
3. 할인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 할인의 경우는 수영만 해당됩니다.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57호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소속 3급 이상 직원

3.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사회복지단체 대

표

4. 속초시 소비자단체 등 수급자 대표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 또는 긴급 안건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의결의 경우: 원안 의결
2. 부결의 경우: 부결(부결사유 제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양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계자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20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 결산 미승인 등), 평가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 발생 시: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20
	□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예: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20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예: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예: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예: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예: 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예: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5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5점)	☐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 계획(예: 주기적 안전점검, 전문직 고용 등) ☐ 수요자(입소자 등)를 위한 건강,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5
합 계: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0-13호(2020.2.1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동명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27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6	동명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동명동 464번지 일원	-	증)3,292	3,29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46	속초시 동명동 464번지 일원	3,292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292	-	3,29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33	-	533	16.2	
일반상업지역	2,759	-	2,759	83.8	

1) 용도지구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중심시가 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앙동 471-4대	487,709 (2,597)	-	300~400	2007.11.2. (강고 제2007-236호)	7번 국도 변

※ ()는 지구 내 금회사업 편입 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80	중로1-3 동명398-1도	중로2-33 동명455-1대	일반 도로	-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1	94	10	국지 도로	80	중로1-3 동명398-1도	중로2-33 동명455-1대	일반 도로	-	1977.4.19. (강고제77-72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7	소로1-94	◦ 폭원확장 - 폭원 : 6m ⇒ 10m	◦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폭원 확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3,292	-		3,292	
A	2,348	A-1	속초시 동명동 464번지 일원	2,348	주상복합용지
B	811	B-1	속초시 동명동 462-6번지 일원	811	소로1-94
	133	B-2	속초시 동명동 398-1번지 일원	133	도로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1	동명동 464번지 일 원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상업지역	◦ 8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상업지역	◦ 900% 이하
		높이	◦ 36층 이하	
		배치	◦ 가로경관 향상, 보행공간 확보 및 대지와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감 있는 건축물 배치 유도 ◦ 대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건축물 배치, 층수, 간격 등의 적절한 배치 유도	
		형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대비가 강한 색채는 억제하고 중명도, 중채도의 색으로 자연색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공동주택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동명동 464 번지 일원	단지내 조경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 유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을 허용하며 외의 구간은 차량진출입불허	
		공공보행로	- 소로1-94호선(기정 소로3-27호선)에 접한 대지내에 1.5m이상의 공공보행로를 확보 - 공공보행로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공공시설물 외의 기타시설 설치 금지)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교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 (주)더다올 대표 서범석

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58번길 16, 608호(한숲스퀘어그린)

3. 사업위치 : 속초시 교동 779-18 외 4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분양주택	○ 대지면적 : 4,777m ² ○ 건축연면적 : 11,999.2623m ² ○ 주 용 도 : 아파트 ○ 층 수 : 지하1 / 지상18층 ○ 세 대 수 : 90세대	24,714,427천원	-

5. 사업시행기간 : 2020. 4. 15. ~ 2022. 9. 15.(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

7. 관계서류는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축과(☎033-639-2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속 초 시 장

1. 하천의 명칭		청초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정왕기
	주소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94 청대 쉼골 싸이딩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	신축사무소 진출입로 및 관로 매설
	개요	신축사무소에 따른 진출입로 및 오수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63-6번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63-4번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306-6번지
	면적	18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20. 2. 28. ~ 2023. 12. 31.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0년 02월 24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2. 28.~ 03. 13.(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도문동 486번지 단독주택 2020-건축과-신축신고-10 (2020.02.24.)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도문동	486	답	5,355	476	김해현		건축주 : 배익호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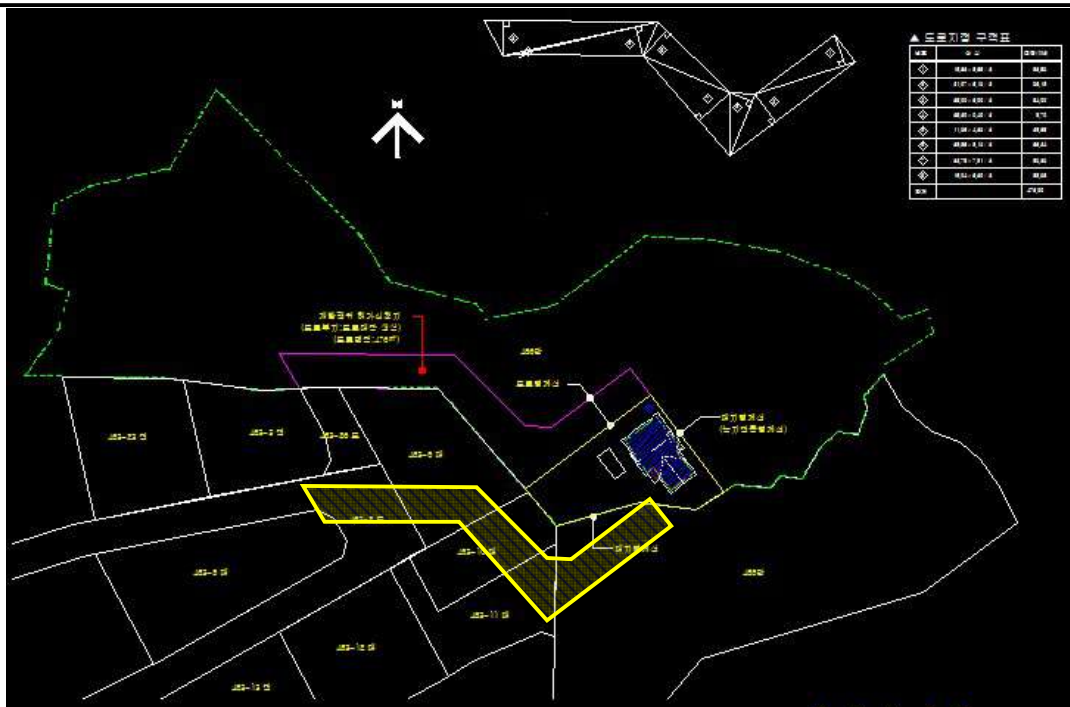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19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28. ~ 2020. 3. 13.(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부과액(원)	송달불능사유
김*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4길 38-7(자양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처분 사전통지	256,680	주소 불명
김*영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1(영랑동)	"	2,517,140	"
전*경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57(대포동)	"	266,910	"
고*자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0, 선아윗집(대포동, 상가3호)	"	1,362,820	"
김*자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상가31호 진경이네(대포동)	"	1,216,870	"
박*배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상가28호 어부박(대포동)	"	1,216,870	"
임*희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기쁨이네(대포동, 상가18호)	"	1,216,870	"
변*식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799-16(대포동)	"	145,560	"
박*순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43(동명동)	"	583,170	"
고*열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4(청호동)	"	3,066,040	"
서*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84, 104동 807호(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	2,238,910	"
김*의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20, 106동 1503호(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	2,773,120	"
양*춘	강원도 속초시 선사로2길 7-9(조양동)	"	4,560,190	"
이*철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12, 105동 902호(조양동, 청대주공아파트)	"	129,020	"
박*영	강원도 속초시 만천1길 27(교동)	"	88,770	"
송*임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61-24(교동)	"	463,730	"
(주)진원산업	강원도 속초시 밤골2길 13(교동)	"	494,760	"
심*흠	강원도 속초시 만천4길 28, 101호(교동, 로얄맨션)	"	156,280	"
윤*영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4길 10, C동 102호(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	"	7,344,000	"
권*희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1길 11-1(영랑동)	"	9,649,920	"

성명	주소	내용	부과액(원)	송달불능사유
최*선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20, 102동 305호(조양동,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처분 사전통지	456,140	주소 불명
김*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4길 38-7(자양동)	"	258,680	"
엄*길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27(금호동)	"	59,780	"
한*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6	"	61,920	"
이*숙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14-1(동명동)	"	2,881,960	"
손*욱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4번길 156(대포동)	"	1,646,110	"
노*현	강원도 속초시 수북로 33(교동)	"	1,205,720	"
노*현	강원도 속초시 수북로 33(교동)	"	1,380,800	"
박*재	강원도 속초시 수북로 29-1(교동)	"	38,400	"
조*경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14(청학동)	"	3,177,600	"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4항에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19년)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639-247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2. 28.

속 초 시 장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이 일부 개정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5회 제한규정 삭제(안 제47조제1항·제2항)
- 나. 상위 법령 상 조례에 위임 규정이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및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안 제28조제4항, 제36조제3항제8호)
- 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6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 간 접한 대지에 한한다)의 적용제외 규정을,
→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으로 접

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으로 일부 개정하여 건축분쟁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 43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불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건축과(건축허가팀)
- 연락처 : 033-639-2769 (FAX 033-639-231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1회로 하며, 단서의 부과 횟수는 총 5회까지”를 “1회”로 한다.

별표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바.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바.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로 하고,
“단, 미관지구내 건축물은”을 “단,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4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 (3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3미터 이상

비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비고3)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화장실, 경비실로 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외벽 각부분(처마, 계단, 발코니포함) 으로 부터의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그 밖에 모든 건축물(단, 법 제59조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u>50명</u>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에 대하여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조(구성 등) ① ----- ----- ----- <u>150명</u>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③ (생략)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u><삭 제></u>
1. <u>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2. <u>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u>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② (생략)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
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4조의 기준에 의
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
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7. (생 략)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
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
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
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제4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
다.

1. · 2. (생 략)

③ -----

-----.

1 ----- .

----- 제35조

- - .

-----.

2.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맞벽건축)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u> <u>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u>	3. <u>시가지경관지구</u> ----- -----
4. · 5. (생 략) ②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④ <u>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6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 간 접한 대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u>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u> 1. <u>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u> 2. <u>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u> 3. <u>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u>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u>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u>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 <u>60제곱미터</u> ----- ----- ----- ----- -----

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 6. (생략)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의 부과 횟수는 연 <u>1회</u>로 하며, 단서의 부과 횟수는 총 <u>5회</u>까지로 한다. ③ ~ ⑤ (생략)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u>1회</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발췌)

<안 제6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안 제28조제4항>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 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안 제36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8호>

「속초시 건축 조례」 제35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따른다.

<안 제42조제1항제3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67호, 2019. 4. 18., 일부개정]

→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

<안 제43조제4항>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이유

- 노학동 ‘테르바움’ 199세대, 청호동 ‘서희스타힐스 더베이’ 242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2월~3월 중 입주 예정에 따라 동별 통·반을 중설하여 효율적 동 행정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정비
 - 노학동 내 1개통(제50통), 4개반 신설(기존 49개통 266반 ⇒ 50개통 270반)
 - 청호동 내 1개통(제20통), 4개반 신설(기존 19개통 70반 ⇒ 20개통 74반)

- 속초시 통·반 조정

구 분	조 정 내 역		증감내역
	조정 전	조정 후	
통 수	231	233	2
반 수	1,147	1,155	8

- 상세내역 : 노학동 50통 신설 / 청호동 20통 신설

동 명	통·반명칭		세대수 현황		
	통	반	동(호)	층수	세대수
계					441
노학동	50	소계			199
		1	101동~103동, 115동~116동	4층	55
		2	104동~106동	4층	40
		3	111동~114동	4층	56
		4	107동~110동	4층	48
청호동	20	소계			242
		1	아파트내 상가	1층~2층	
			1호~2호	3층~31층	58
		2	오피스텔내 상가	1층	
			오피스텔	2층~6층	10
			3호~4호	3층~31층	58
		3	5호~6호	3층~31층	58
		4	7호~8호	3층~31층	58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137 / 팩스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별	통	반	비 고
총	233	1,155	
영랑동	14	69	
동명동	17	82	
금호동	30	145	
교 동	37	202	
노학동	50	270	
조양동	50	250	
청호동	20	74	
대포동	15	63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영랑동	제 1 통	제 1 반	영랑동	15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20-3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13-5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31-1	일원	
영랑동	제 2 통	제 1 반	영랑동	131-37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47-167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40-10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31-101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31-11	일원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147-73	일원	
영랑동	제 3 통	제 1 반	영랑동	147-10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48-44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47-35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48-10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48-9	일원	
영랑동	제 4 통	제 1 반	영랑동	327-1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200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200	일원	동현아파트101동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201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202	일원	
영랑동	제 5 통	제 1 반	영랑동	144-1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48-56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49-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51-3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57	일원	양우비치A동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157	일원	양우비치B동
영랑동		제 7 반	영랑동	157	일원	양우비치C동
영랑동	제 6 통	제 1 반	영랑동	148-121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57-16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63-8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63-40	일원	
영랑동	제 7 통	제 1 반	영랑동	209-10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229-10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245-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245-4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229-26	일원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231-2	일원	
영랑동	제 8 통	제 1 반	영랑동	183-3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60-1	일원	송하아파트1,2동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60-1	일원	송하@3동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79-18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80-1	일원	대명드림빌@ 1~4호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180-1	일원	대명드림빌@ 5~8호
영랑동	제 9 통	제 1 반	영랑동	570-19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83-5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59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592-1	일원	
영랑동	제 10 통	제 1 반	장사동	577-12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621-1	일원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616-13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540-2	일원	
영랑동	제 11 통	제 1 반	장사동	632-33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632-42	일원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632-12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632-152	일원	
영랑동	제 12 통	제 1 반	장사동	635-13 삼성맨션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634-48/635-47	일원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640-4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600	일원	
영랑동		제 5 반	장사동	518-7	일원	우림연립 가, 라, 마동
영랑동		제 6 반	장사동	518-7	일원	우림연립 나, 다동
영랑동	제 13 통	제 1 반	장사동	84-2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237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228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255	일원	
영랑동	제 14 통	제 1 반	장사동	632-208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650	대희지센트 아파트	@101동, 102동1,2호라인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650	대희진센트 아파트	@102동 3~6호라인, 103동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634-55	일원	
동명동	제 1 통	제 1 반	동명동	1-202	일원	영금정아파트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1-148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1-13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1-133	일원	
동명동	제 2 통	제 1 반	동명동	3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3-15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117-1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66-1	일원	
동명동	제 3 통	제 1 반	동명동	89-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341-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349-3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42-1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362	일원	
동명동	제 4 통	제 1 반	동명동	450-7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50-5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50-25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50-4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266-1	일원	
동명동	제 5 통	제 1 반	동명동	253-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280-3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258-1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06-2	일원	
동명동	제 6 통	제 1 반	동명동	450-140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382-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396-6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91-4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66-12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466-42	일원	설악센트리움
동명동	제 7 통	제 1 반	동명동	459-1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50-148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50-238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43-1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50-302	일원	
동명동	제 8 통	제 1 반	동명동	465-19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85-4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89-2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30-10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39-32	일원	
동명동	제 9 통	제 1 반	동명동	450-123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25-2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261-2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59-2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261-67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52-2	일원	
동명동	제 10 통	제 1 반	동명동	524-1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27-5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34-1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50-215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35-1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450-289	일원	
동명동	제 11 통	제 1 반	동명동	437-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30-18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30-3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30-36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30-51 529	동명연립 대명빌라	동명연립가, 다101~303 나101~104,201~203, 301~304 대명빌라101~305, 대명빌라101~305
동명동	제 12 통	제 1 반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손(4호까지)	101~601호, 102~1002호 103~1303호, 104~1304호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손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14-1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13-46	일원	
동명동	제 13 통	제 1 반	동명동	513-9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13-79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13-93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13-110	성우연립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12-53	중앙연립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13-139	일원	
동명동	제 14 통	제 1 반	동명동	566-7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67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67-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77-10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95-15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79-2	일원	
동명동	제 15 통	제 1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A동101호~1501호, A동102호~1502호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A동103호~1503호, A동104호~1504호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A동105호~1505호, A동106호~1506호, A동107호~1507호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B동101호~107호, B동201호~207호, B동301호~307호, B동401호~407호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B동501호~507호, B동601호~607호, B동701호~707호, B동801호~807호, B동901호~906호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동명동	제16통	제 1 반	동명동		e편한세상 영랑호아파트	101동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e편한세상 영랑호아파트	102동
동명동	제17통	제 1 반	동명동		e편한세상 영랑호아파트	103동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e편한세상 영랑호아파트	104동
금호동	제 1 통	제 1 반	중앙동	468-15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68-2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68-27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76-12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68-34	일원	
금호동	제 2 통	제 1 반	중앙동	478-38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9-2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81-2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82-289	일원	
금호동	제 3 통	제 1 반	중앙동	479-18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9-75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73-29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73-70	일원	
금호동	제 4 통	제 1 반	중앙동	475-5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5-7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68-155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69-4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71-50	일원	
금호동	제 5 통	제 1 반	중앙동	473-13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2-11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71-4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72-44	일원	
금호동	제 6 통	제 1 반	중앙동	493-5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4-7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501-5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88-85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96-57	영보주택 일원	
금호동	제 7 통	제 1 반	중앙동	471-39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1-22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71-53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3-88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93-90	일원	
금호동	제 8 통	제 1 반	중앙동	493-19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7-4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97-76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7-81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93-10	일원	
금호동	제 9 통	제 1 반	중앙동	493-142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7-56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93-131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8-51	일원	
금호동	제 10 통	제 1 반	중앙동	496-39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503-2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503-140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501-9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503-35	일원	
금호동	제 11 통	제 1 반	중앙동	498-37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8-17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96-49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6-11	일원	
금호동	제 12 통	제 1 반	중앙동	503-10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623-1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622-25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623-44	일원	아리랑빌라
금호동	제 13 통	제 1 반	금호동	482-108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2-100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2-148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2-279	일원	
금호동	제 14 통	제 1 반	금호동	482-202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4-12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4-33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4-14	일원	
금호동	제 15 통	제 1 반	금호동	479-3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73-60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73-124	일원	
금호동	제 16 통	제 1 반	금호동	489-102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9-79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9-22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9-29	일원	
금호동	제 17 통	제 1 반	금호동	488-165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8-20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257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8-228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489-6	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489-14	일원	
금호동	제 18 통	제 1 반	금호동	492-31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90-9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124	일원	
금호동	제 19 통	제 1 반	금호동	488-328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8-32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3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8-251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488-187	일원	
금호동	제 20 통	제 1 반	금호동	488-109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8-7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68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8-2	일원	
금호동	제 21 통	제 1 반	금호동	625-35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502-3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502-33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502-17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5-144	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5-210	일원	
금호동	제 22 통	제 1 반	금호동	622-91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2-188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3-40	대명빌라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2-116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512-26	효성빌라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2-43	일원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2-263	일원	
금호동	제 23 통	제 1 반	금호동	621-135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1-30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1-71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2-180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1-159	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1-106	설악연립주택	가동101~205호, 나동101~205호, 다동101~202호
금호동	제 24 통	제 1 반	금호동	625-42	금호연립	가동101~205호, 나동101~205호, 다동101~205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5-42	금호연립	라동101~205호, 마동101~205호, 바동101~203호, 사동101~202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5-88	성진연립	1동101~305호,2동101~305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5-88	성진연립	3동101~305호,5동101~305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5-88	성진연립	6동101~305호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5-108	성진연립	7동101~305호,8동101~305호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5-108	성진연립	9동101~307호
금호동	제 25 통	제 1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1~2층)	101~211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3~4층)	301~411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5~6층)	501~611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7~8층)	701~811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9~10층)	901~1010호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5-200	성진연립	10동101~307호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5-200	성진연립	11동101~307호
금호동	제 26 통	제 1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1동(1~5층)	101~506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601~1006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1동(6~10층)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1동(11~15층)	1102~1506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2동(7~8호)	107~1507호, 108~1508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2동(9~10호)	109~1509호, 110~1510호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2동(11~12호)	111~1511호, 112~1512호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 2동(13~14호)	113~1513호, 114~1014호
금호동	제 27 통	제 1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1~3층	101~311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4~6층	401~611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7~9층	701~910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10~15층	1001~1509호
금호동	제 28 통	제 1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1동	102~1503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101~1503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3동	101~1506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4동	101~1504호
금호동	제 29 통	제 1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5동	101~1502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101~1506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101~1504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9	보람레이크더하임 101동	101호~1503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9	보람레이크더하임 102동	101호~1504호
금호동	제 30 통	제 1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1동	101~1803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2동	101~1903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3동 (1~2호)	101호~1801호, 102호~1802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3동 (3~4호)	103호~1903호, 104호~1904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3동 (5~6호)	105호~1805호, 106호~1806호
교 동	제 1 통	제 1 반	청학동	482-199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2-64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2-62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2-69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교 동	제 2 통	제 1 반	청학동	482-442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2-32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2-14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2-220	일원	
교 동	제 3 통	제 1 반	청학동	482-309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2-30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2-297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2-385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482-312	일원	
교 동	제 4 통	제 1 반	청학동	644-32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4-114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4-119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3-20	일원	
교 동	제 5 통	제 1 반	청학동	483-16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3-15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6-216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6-160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486-165	일원	
교 동	제 6 통	제 1 반	청학동	486-141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6-8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44-1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6-54	일원	
교 동	제 7 통	제 1 반	청학동	642-74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42-44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42-5	대명맨션408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42-5	대명맨션303	
교 동		제 5 반	청학동	634-44	일원	
교 동	제 8 통	제 1 반	청학동	486-154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34-58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34-98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34-80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634-11	일원	
교 동	제 9 통	제 1 반	청학동	487-52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7-1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7-91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7-20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487-33	일원	
교 동	제 10 통	제 1 반	청학동	633-51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33-139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33-129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33-109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교 동		제 5 반	청학동	631-1	일원	
교 동	제 11 통	제 1 반	청학동	632-30	금강아파트A동	101호~504호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32-31	금강아파트A동	105호~506호, 101호~502호, 103호~506호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32-31	금강아파트B동	103호~506호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32-31	금강아파트C동	107호~508호, 102호~503호
교 동	제 12 통	제 1 반	교동	664-207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64-130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64-129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64-223	일원	
교 동	제 13 통	제 1 반	교동	664-67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64-61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64-102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64-21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664-28	일원	
교 동	제 14 통	제 1 반	교동	482-264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482-289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482-326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482-298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482-264	일원	
교 동	제 15 통	제 1 반	교동	644-6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44-19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44-24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45-28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658-65	일원	
교 동	제 16 통	제 1 반	교동	636-77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54-133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53-3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54-107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654-92	일원	
교 동	제 17 통	제 1 반	교동	655-53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54-78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55-62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27-249	일원	
교 동	제 18 통	제 1 반	교동	636-4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28-77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36-55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36-12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636-96	일원	
교 동		제 6 반	교동	635-3	제일연립	가동
교 동		제 7 반	교동	635-3	제일연립	나동, 제일상가
교 동	제 19 통	제 1 반	교동	627-100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55-47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780-92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27-56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655-13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교 동		제 6 반	교동	627-141	일원	
교 동	제 20 통	제 1 반	교동	628-100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27-13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28-137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27-224	일원	
교 동		제 5 반	교동	627-230	일원	
교 동	제 21 통	제 1 반	교동	780-48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780-106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780-88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780-288	일원	
교 동	제 22 통	제 1 반	교동	627-135	속초대명1차A	101호~308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7-135	속초대명1차A	401호~608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7-135	속초대명1차A	701호~10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7-135	속초대명1차A	1101호~1506호
교 동	제 23 통	제 1 반	교동	628-1	서울대명A	1021호~1511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8-1	서울대명A	913호~1111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8-1	서울대명A	513호~713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8-1	서울대명A	101호~613호
교 동	제 24 통	제 1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1동	101호~405호
교 동		제 2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1동	501호~805호
교 동		제 3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2동	
교 동		제 4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3동	101호~405호
교 동		제 5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3동	501호~805호
교 동		제 6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101호~405호
교 동		제 7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501호~805호
교 동	제 25 통	제 1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101호~305호
교 동		제 2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401호~605호
교 동		제 3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6동	101호~305호
교 동		제 4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6동	401호~605호
교 동		제 5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7동	101호~405호
교 동		제 6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7동	501호~805호
교 동		제 7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8동	
교 동		제 8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09동	
교 동	제 26 통	제 1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10동	
교 동		제 2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11동	
교 동		제 3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12동	101호~405호
교 동		제 4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12동	501호~805호
교 동		제 5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13동	101호~405호
교 동		제 6 반	교동	898	주공2차아파트213동	501호~805호
교 동	제 27 통	제 1 반	교동	903	주공2차아파트214동	101호~405호
교 동		제 2 반	교동	903	주공2차아파트214동	501호~805호
교 동		제 3 반	교동	903	주공2차아파트215동	101호~605호
교 동		제 4 반	교동	903	주공2차아파트215동	701호~1005호
교 동		제 5 반	교동	903	주공2차아파트216동	
교 동		제 6 반	교동	903	주공2차아파트217동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교 동	제 28 통	제 1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1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1동	103호~13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2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2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2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6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3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7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3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8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3동	105호~1306호
교 동		제 9 반	교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4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29 통	제 1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1호~14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3호~14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5호~14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7호~1408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2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2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7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2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30 통	제 1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3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3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3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6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7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7호~1508호
교 동		제 8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9동	101호~902호
교 동	제 31 통	제 1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1호~15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3호~15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5호~15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7호~1508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2동101호~150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2동103호~1504호, 상가
교 동		제 7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3동101호~1502호
교 동		제 8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3동103호~1504호
교 동		제 9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3동105호~1506호
교 동	제 32 통	제 1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101호~311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401호~611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701호~911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1001호~1211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1301호~1511호
교 동	제 33 통	제 1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1동	
교 동		제 2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2동	101호~1202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2동	103호~1404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2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3동	101호~140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3동	103호~1604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교 동		제 7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3동	105호~2106호
교 동	제 34 통	제 1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4동	
교 동		제 2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5동	101호~1802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5동	103호~2104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7동	101호~1802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7동	103호~1804호
교 동		제 6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7동	105호~2106호
교 동		제 7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8동	
교 동	제 35 통	제 1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1호~17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3호~17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5호~17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7호~1908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9호~1810호
교 동	제 36 통	제 1 반	교동	620	협성아파트	101호~218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0	협성아파트	301호~418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0	협성아파트	501호~618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0	협성아파트 장미아트빌주택일원	701호~1003호
교 동	제 37 통	제 1 반	교동	781-42	옥토아파트	101호~18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781-42	옥토아파트	103호~1805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42	옥토아파트	106호~807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42	계명아파트	101호~312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12	계명아파트	401호~61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781-12	계명아파트	701호~1205호
노학동	제 1 통	제 1 반	교동	674-32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690-15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658-8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62-1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37-7	일원	
노학동	제 2 통	제 1 반	교동	767-93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67-20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67-213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67-36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67-187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67-47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767-221	프레지던트인텔빌라 만천빌라	
노학동	제 3 통	제 1 반	교동		로얄1차아파트B동	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1차아파트B동	5호~7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1차아파트B동	8호~10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얄1차아파트A동	상가
노학동		제 5 반	교동		로얄1차아파트A동	1호~3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로얄1차아파트A동	4호~6호, 로얄맨션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노학동		제 7 반	교동		로알빌라	가~다동
노학동		제 8 반	교동		로알골든아파트	가~다동
노학동	제 4 통	제 1 반	교동		럭키아파트2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럭키아파트3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럭키아파트5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럭키아파트6동	
노학동	제 5 통	제 1 반	교동		럭키아파트1동	상가
노학동		제 2 반	교동		럭키아파트7동	1~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럭키아파트7동	5~7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럭키아파트8동	1~3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럭키아파트8동	5~7호
노학동	제 6 통	제 1 반	교동	804-83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99-77	현대골든빌라,한솔빌라	
노학동		제 3 반	교동	799-135	우성아트빌라가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800-56	우성아트빌라나동, 한솔빌라2차	
노학동	제 7 통	제 1 반	교동	741-7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657-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43-22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43-31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43-39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43-41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910-5	일원	
노학동	제 8 통	제 1 반	교동	657-37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657-53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657-19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656-17	국민주택	가동, 나동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양코스모스연립	가, 나동
노학동		제 6 반	교동		대양코스모스연립	다, 라동
노학동	제 9 통	제 1 반	교동	656-66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73-11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74-45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74-51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79-30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69-32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769-73	일원	
노학동	제 10 통	제 1 반	교동	780-195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80-19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80-58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80-149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80-138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80-200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777-9	금도주택	가, 나, 다동
노학동		제 8 반	교동	777-12	동설악빌라	1동~9동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노학동	제 11 통	제 1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A동	1호~11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B동	1호~12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C동	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C동	5호~8호
노학동	제 12 통	제 1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1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1동5호~8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동1호~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동3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동5호~6호
노학동	제 13 통	제 1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3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3동5호~8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5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5동5호~6호
노학동	제 14 통	제 1 반	교동		현대아파트	1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아파트상가	1호~3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아파트지하	5호~6호상가동10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아파트	2동1호~2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아파트	2동3호~4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현대아파트	2동5호~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현대아파트	3동1호~2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현대아파트	3동3호~4호
노학동	제 15 통	제 1 반	교동		현대아파트	4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아파트	4동3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아파트	4동5호~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아파트	4동7호~8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아파트	5동1호~2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현대아파트	5동3호~4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현대아파트	5동5호~6호
노학동	제 16 통	제 1 반	교동	799-149	거산빌라	
노학동		제 2 반	교동	799-89	동설악빌라	A, B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798-25	현대빌라,교동주택	그린빌라
노학동		제 4 반	교동	799-32	거산빌라2차	
노학동		제 5 반	교동	799-91	일원	
노학동	제 17 통	제 1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101호~215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301호~415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501호~615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701호~815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901호~1015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1101호~1212호
노학동	제 18 통	제 1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1동101호~506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1동601호~100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1동1101호~150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2동101호~506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2동601호~1006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2동1101호~150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3동101호~506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노학동		제 8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3동601호~1006호
노학동		제 9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3동1101호~1506호
노학동	제 19 통	제 1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101호~216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301호~41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501호~61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701호~816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901호~1016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1101호~121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1301호~1516호
노학동	제 20 통	제 1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101호~216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301호~41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501호~61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701호~816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901호~1016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1101호~121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1301호~1516호
노학동	제 21 통	제 1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3동1층~4층
노학동		제 4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3동5층~8층
노학동		제 5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3동9층~12층
노학동		제 6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4동1호~4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4동5호~8호
노학동	제 22 통	제 1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5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5동5호~8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6동1층~4층
노학동		제 4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6동5층~8층
노학동		제 5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6동9층~12층
노학동		제 6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7동4호~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7동1호~3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8동
노학동	제 23 통	제 1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301호~2호, 401호~2호, 501호~2호, 601호~2호, 701호~2호, 801호~2호, 901호~2호, 1001호~2호, 1101호~2, 1201호~2호, 130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108호~31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403호~614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알나하나2차아파트 703호~911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로알나하나2차아파트 1003호~1311호	
노학동	제 24 통	제 1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3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4동
노학동		제 5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5동
노학동		제 6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7동1층~4층
노학동		제 7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7동5층~8층
노학동		제 8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7동9층~12층
노학동		제 9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6동
노학동	제 25 통	제 1 반	교동	928-6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925-1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931	우신빌라,고산빌라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934-5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937-14	우성빌라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941-7	가야빌라일원	
노학동	제 26 통	제 1 반	교동	769-64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충용아파트	
노학동		제 3 반	교동		근로자아파트	1호~5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근로자아파트	6호~10호
노학동	제 27 통	제 1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1동1호~3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1동4호~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1호~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3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5호~6호
노학동	제 28 통	제 1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3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3동3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4동1호~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4동3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5동1호~2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5동3호~4호
노학동	제 29 통	제 1 반	교동		대우아파트상가	101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우아파트	3호~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2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3동1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4동1호~4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4동5호~6호
노학동	제 30 통	제 1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5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6동1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6동5호~6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7동1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7동5호~6호
노학동	제 31 통	제 1 반	노학동	177-1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68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162-2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4 반	노학동	143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5 반	노학동	132-2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32 통	제 1 반	노학동	278	이목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688	이목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3 통	제 1 반	노학동	338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345-4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616-1	노리마을 일원	동우대학예지원, 한전속초연수원
노학동		제 4 반	노학동	759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5 반	노학동	627-38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6 반	노학동	626-2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4 통	제 1 반	노학동	1265-100	응골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478-2	응골마을 일원	
노학동	제 35 통	제 1 반	노학동	856-2	척산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924-3	척산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943-11	척산마을 일원	
노학동	제 36 통	제 1 반	노학동	748-6	도평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753-21	도평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7 통	제 1 반	노학동	1006-74	신흥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006-18	신흥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746-104	신흥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8 통	제 1 반	노학동	1011-28	학사평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013-38	학사평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1064	학사평마을 일원	
노학동	제 39 통	제 1 반	노학동	1038-36	자활촌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000-210	자활촌마을 일원	
노학동	제 40 통	제 1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1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1동5호~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2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2동5호~6호
노학동	제 41 통	제 1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3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6동1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6동5호~8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6동9호~10호
노학동	제 42 통	제 1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4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4동5호~9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5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5동5호~8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5동9호~10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1호~4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5호~8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9호~10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노학동	제 43 통	제 1 반	교동	967-13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965-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971-7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977-17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982	일원	
노학동	제 44 통	제 1 반	교동	946-6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942-5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943-17	속초세무서기숙사	
노학동		제 4 반	교동	943-10	유정빌라	
노학동		제 5 반	교동	943-15	우성빌라	
노학동		제 6 반	교동	949-7	공영빌라	
노학동		제 7 반	교동	950-4	일원	
노학동	제 45 통	제 1 반	교동		석미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석미아파트	상가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석미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석미아파트	103동
노학동	제 46 통	제 1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3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4동
노학동		제 5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5동
노학동		제 6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6동
노학동	제 47 통	제1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1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2동	201호~901호, 202호~1502호 201호~1701호, 102호~1602호 관리사무소일원, 경로당일원
노학동		제2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2동	103호~1503호, 104호~1304호 105호~1205호, 106호~906호, 상가시설일원
노학동		제3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2동	107호~1707호,108호~1708호 109호~1609호, 210호~1510호
노학동		제4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노학동		제5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3동	103호~1703호,104호~1704호 105호~1405호, 103호~806호
노학동	제 48 통	제1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4동	201호~1201호, 102호~14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노학동		제2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4동	105호~1905호, 106호~1906호 107호~2007호, 108호~2008호
노학동		제3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5동	2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노학동		제4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6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903호,104호~1904호
노학동		제5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6동	105호~2005호, 106호~2006호 101호~1101호, 102호~1706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하우스토리아파트 107동	
노학동		제6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 107동	103호~2003호, 104호~2004호, 105호~2005호 106호~1506호, 107호~1007호
노학동	제 49 통	제 1 반	교동		시티프라디움아파트	101동 1호~2호라인(28층)
노학동		제 2 반	교동		시티프라디움아파트	101동 3호~5호라인(29층)
노학동		제 3 반	교동		시티프라디움아파트	101동 6호~7호라인(29층)
노학동		제 4 반	교동		시티프라디움아파트	102동 1호~2호라인(24층)
노학동		제 5 반	교동		시티프라디움아파트	102동 3호~5호라인(28층)
노학동	제50통	제 1 반	노학동		테르바움	101동~103동, 115동~116동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테르바움	104동~106동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테르바움	111동~114동
노학동		제 4 반	노학동		테르바움	107동~110동
조양동	제 1 통	제 1 반	조양동	1374	우성연립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357	일원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1395	해성아파트가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해성아파트나동	
조양동	제 2 통	제 1 반	조양동	1377-24	설악연립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377-35	조양빌라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군인아파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진덕설악맨션	1층~7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진덕설악맨션	8층~15층
조양동	제 3 통	제 1 반	조양동	1368-13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365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1371-4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1360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1338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1120-2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1535-16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4 통	제 1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가동	1호~6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가동	7호~12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나동	1호~6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나동	7호~12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다동	1호~6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다동	7호~12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라동	1호~6호
조양동		제 8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라동	7호~12호
조양동	제 5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1동	101~311, 401~611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1동	701~911, 1001~1211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1동	1301~1511, 1601~1811호 1901~2011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2동	101~310, 401~610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2동	701~910, 1001~1210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2동	1301~1510, 1601~1710호 1801~2010호
조양동	제 6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01~311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401~611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701~911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001~1211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301~1511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601~1811호, 1901~2011호
조양동	제 7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4동	101~407, 501~807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4동	901~1207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4동	1301~1607호, 1701~2007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5동	101~311호, 401~611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5동	701~911호, 1001~1211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5동	1301~1511호, 1601~2011호
조양동	제 8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101호~409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501호~809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901호~1209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1301호~1609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1701호~1809호, 1901호~1904호 2001호~2004호
조양동	제 9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01호~31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401호~614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701호~91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001호~1214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301호~1514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601호~1814호
조양동	제 10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3동	101호~408호 501호~808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3동	901호~1208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3동	1301호~1608호, 1701호~1808호 1904호~1908호, 2004호~2008호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101호~408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501호~808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901호~1208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1301호~1608호,1701호~1808호 1901호~1905호,2001호~2005호
조양동	제 11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1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2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3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12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12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4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5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6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7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13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8동	101호~1202호, 103호~12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8동	105호~12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9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10동	101호~1204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11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14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1동	101호~1206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7동	101호~6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7동	701호~1206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6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6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5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5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15 통	제 1 반	조양동		주양주공2단지202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2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3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3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4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4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16 통	제 1 반	조양동	1522	일원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524-1	삼우연립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1075	온정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1191-1	온정리마을	
조양동	제 17 통	제 1 반	조양동	636-35	일원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634-27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633-10	일원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633-8	오복연립일원	
조양동	제 18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101동	101호~12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102동	101호~12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101호~315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401호~615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701호~915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1001호~1214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1301호~1514호
조양동	제 19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3동	1층~7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3동	8층~15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1동	1층~4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1동	5층~8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1동	9층~13층
조양동	제 20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4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4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2동	1층~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2동	4층~6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2동	7층~10층
조양동	제 21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4동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4동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4동	9층~1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7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7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7동	11층~15층
조양동	제 22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5동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5동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5동	9층~1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8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8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8동	11층~13층
조양동	제 23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3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3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3동	11층~14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6동	1층~4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6동	5층~8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6동	9층~12층
조양동	제 24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2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2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2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1동	1층~7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1동	8층~15층
조양동	제 25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1동	1층~15층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2동	1층~15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3동	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4동	1층~1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8동	1층~15층
조양동	제 26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5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5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5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6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6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6동	11층~15층
조양동	제 27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7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7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7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9동	1층~7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9동	8층~11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9동	12층~15층
조양동	제 28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0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0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0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1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1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1동	11층~15층
조양동	제 29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1층~3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4층~7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8층~11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12층~1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1층~3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4층~7층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8층~11층
조양동		제 8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12층~15층
조양동	제 30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3동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3동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3동	9층~1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1동	1층~4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1동	5층~8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1동	9층~12층
조양동	제 31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2동	1층~6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2동	7층~12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4동	1층~4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4동	5층~8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4동	9층~13층
조양동	제 32 통	제 1 반	조양동	1512-7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989-1	논산리마을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735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733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33 통	제 1 반	조양동	536-1	청대새마을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614-4	청대새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1동, 9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2동, 8동, 10동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3동, 7동, 11동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4동, 5동, 6동
조양동	제 34 통	제 1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9층~12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13층~15층
조양동	제 35 통	제 1 반	조양동	485	일원	현대빌라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462	청대리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456	청대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344-2	일원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587-3	대명아파트	
조양동	제 36 통	제 1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1~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5~7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8~11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12~15층
조양동	제 37 통	제 1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2동, 103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4동~105동
조양동	제 38 통	제 1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3동, 104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4동
조양동	제 39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1동 1층~7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1동 8층~14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5동
조양동	제 40 통	제 1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아아파트	104동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5동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6동
조양동	제 41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조양양우내안애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조양양우내안애	102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조양양우내안애	103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속초조양양우내안애	104동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속초조양양우내안애	105동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속초조양양우내안애	106동
조양동	제 42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1동 1층~7층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1동 8층~14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2동 1층~7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2동 8층~13층
조양동	제 43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3동 1층~7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3동 8층~13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4동 1층~7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속초조양내천년나무3단지	304동 8층~14층
조양동	제 44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4동
조양동	제 45 통	제 1 반	조양동		ES아프리움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ES아프리움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ES아프리움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46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1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2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3동
조양동	제 47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4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5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6동
조양동	제 48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7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KCC 스웨첸	108동
조양동	제 49 통	제 1 반	조양동		효성해링턴	101동
		제 2 반	조양동		효성해링턴	102동
		제 3 반	조양동		효성해링턴	103동
조양동	제 50 통	제 1 반	조양동		효성해링턴	104동
		제 2 반	조양동		효성해링턴	105동
		제 3 반	조양동		효성해링턴	106동
청호동	제 1 통	제 1 반	조양동	1447-25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47-29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50-31	일원	
청호동	제 2 통	제 1 반	조양동	1450-59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50-57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31-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35-3	일원	
청호동	제 3 통	제 1 반	청호동	444-48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444-55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459-119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18-8	일원	
청호동		제 5 반	조양동	1410-8	일원	
청호동	제 4 통	제 1 반	조양동	1480-266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300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80-238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80-187	일원	
청호동	제 5 통	제 1 반	조양동	1490-227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332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90-130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90-208	일원	
청호동		제 5 반	조양동	1490-262	일원	
청호동	제 6 통	제 1 반	조양동	1490-99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60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90-36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90-28	일원	
청호동	제 7 통	제 1 반	조양동	1480-315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324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80-116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80-141	일원	
청호동	제 8 통	제 1 반	조양동	1463-14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63-4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63-4	일원	
청호동	제 9 통	제 1 반	청호동	607-1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774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84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915	일원	
청호동	제 10 통	제 1 반	청호동	1080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098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152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107	일원	
청호동	제 11 통	제 1 반	청호동	1128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165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195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205	일원	
청호동	제 12 통	제 1 반	청호동	1223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258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278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287	일원	
청호동	제 13 통	제 1 반	청호동	1292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316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325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459-26	일원	
청호동	제 14 통	제 1 반	청호동	459-48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459-70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432-7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433-5	일원	
청호동	제 15 통	제 1 반	청호동	433-26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335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433-93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433-54	일원	
청호동	제 16 통	제 1 반	청호동	1347-5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351-9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354-1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338	일원	
청호동	제 17 통	제 1 반	청호동		아이파크아파트	101동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아이파크아파트	102동
청호동	제 18 통	제 1 반	청호동		아이파크아파트	103동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아이파크아파트	104동
청호동	제 19 통	제 1 반	청호동		아이파크아파트	105동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아이파크아파트	106동
청호동	제20통	제 1 반	조양동		서히스타힐스 더베이	1호~2호(3층~31층), 아파트내 상가(1층~2층)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서히스타힐스 더베이	3호~4호(3층~31층), 오피스텔내 상가(1층), 오피스텔(2층~6층)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서히스타힐스 더베이	5호~6호(3층~31층)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서히스타힐스 더베이	7호~8호(3층~31층)
대포동	제 1 통	제 1 반	대포동	925-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798-1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228-5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242	일원	
대포동	제 2 통	제 1 반	대포동	266-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378-1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379-5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318-8	일원	
대포동		제 5 반	대포동	388-1	일원	
대포동		제 6 반	대포동	470-3	일원	
대포동		제 7 반	대포동	381-9	일원	
대포동	제 3 통	제 1 반	대포동	367-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408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348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358-3	일원	
대포동		제 5 반	대포동	415	일원	
대포동	제 4 통	제 1 반	대포동	442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430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431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779	일원	
대포동	제 5 통	제 1 반	대포동	593-9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667-10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517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681	일원	
대포동	제 6 통	제 1 반	대포동	1496-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1606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1591-1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1621	일원	
대포동	제 7 통	제 1 반	도문동	847	일원	
대포동		제 2 반	도문동	834	일원	
대포동		제 3 반	도문동	832-20	일원	
대포동	제 8 통	제 1 반	도문동	1179	일원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대포동	제 9 통	제 1 반	도문동	639	일원	
대포동		제 2 반	도문동	536-2	일원	
대포동		제 3 반	도문동	519-4	일원	
대포동	제 10 통	제 1 반	도문동	204-2	일원	
대포동		제 2 반	도문동	244	일원	
대포동		제 3 반	도문동	175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261	일원	
대포동		제 5 반	설악동	359	일원	
대포동		제 6 반	설악동	371-1	일원	
대포동	제 11 통	제 1 반	설악동	170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170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34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23-3	일원	
대포동	제 12 통	제 1 반	설악동	247-7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253-5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246-36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246-119	일원	
대포동	제 13 통	제 1 반	설악동	325-2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342-5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342-69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342-22	일원	
대포동		제 5 반	설악동	342-70	일원	
대포동	제 14 통	제 1 반	설악동	347-11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347-35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348-44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348-12	일원	
대포동		제 5 반	설악동	348-2	일원	
대포동		제 6 반	설악동	348-2	일원	
대포동	제 15 통	제 1 반	설악동	341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591-3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804	일원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흐름 방해 등을 예방하고 기초 법질서에 대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면제해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제정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방법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 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결과 통지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8.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90), 팩스(033-633-5006), 전자문서
(hye7@korea.kr)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639-219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감사부서의 팀장,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담당부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제출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위 반 사 항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자	
의견진술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명 : (서)

(명)

속 초 시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입,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이사계약서, 운송장 사본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고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등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납품 등 단순물품 승하차	운송장사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비고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